심 사 보 고 서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9.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99. 9. 2

나.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다. 회부일자 : 1999. 9. 8

라. 상정일자 : 1999. 12. 13

2. '98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A)	결산액		
		세입(B) (B/A)	세출(C) (C/A)	이월액(D) (B-C)
합계	235,330,581	234,716,736 (99%)	174,238,667 (74%)	60,478,069 (26%)
일반회계	206,333,466	208,861,283 (101%)	155,336,189 (75%)	53,525,094 (26%)
특별회계	28,997,115	25,855,453 (89%)	18,902,478 (64%)	6,952,975 (24%)

나.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A)	결산액			
		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B)	결손처분(D) (D/B)	미수납액(E) (E/B)
합 계	235,330,581	241,012,841 (102%)	234,716,736 (97%)	289,808 (1%)	6,006,297 (2%)
일반회계	206,333,466	213,471,767 (103%)	208,861,283 (98%)	289,808 (1%)	4,320,676 (2%)
특별회계	28,997,115	27,541,074 (95%)	25,855,453 (94%)	0	1,685,621 (6%)

다. 세입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무 재 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 타
합 계	289,808	227,842	0	56,966	5,000
일 반 회 계	289,808	227,842	0	56,966	5,000
특 별 회 계	0	0	0	0	0

◎ 미수납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사유별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체납	소송및재산압류	기 타
합 계	5,975,283	270,623	39,962	404,130	4,214,152	1,046,416
일반회계	4,320,676	270,623	39,962	381,469	3,603,306	25,316
특별회계	1,654,607	0	0	22,661	610,846	1,021,100

라.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A)	결 산 액			
		자출원인행위액(B) (B/A)	지 출 액(C) (C/A)	이 월 액(D) (D/A)	불 용 액(E) (E/A)
합 계	235,330,581	181,009,943 (76%)	174,238,667 (74%)	43,430,246 (18%)	17,661,668 (7%)
일반회계	206,333,466	160,331,771 (77%)	155,336,189 (75%)	38,951,326 (18%)	12,045,951 (5%)
특별회계	28,997,115	20,678,172 (71%)	18,902,478 (65%)	4,478,920 (15%)	5,615,717 (19%)

마. 이월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비 고
합 계	43,430,246	30,678,370	6,771,277	5,980,599	
일반회계	38,951,326	27,975,145	4,995,582	5,980,599	
특별회계	4,478,920	2,703,225	1,775,695	0	

바. 예산전용

(단위 : 천원)

회 계 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5	179,187	
일반회계	5	179,187	
특별회계	0	0	

사. 계속비 집행

□ 일 반 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A)	전년도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년도이월액 (E=C-D)	불용액
계	13,156,640	6,373,588	19,530,228	13,549,629	5,980,599	
하수종말처리시설 설 치 공 사	8,070,000	2,850,891	10,920,891	10,006,127	914,764	
종합운동장및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5,086,640	3,522,697	8,609,337	3,543,502	5,065,835	

□ 특 별 회 계 : 없음

아. 채무부담 행위

□ 일 반 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일자)	채 무 부 담 행 위 액	상환 조건	채무부담 행위사유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계 4건		850,000			850,000
동문중로 1-2호 도로개설토지매입	1998. 11.5	150,000	99일시상환	도건도 13680-923('98.8.28) 의거 '99년도 자원계획	150,000
동문32통 도로개설공사	〃	200,000	〃	〃	200,000
유신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	200,000	〃	〃	200,000
대신시장 현대화사업	1998. 12.16	300,000	〃	도지경 56160-753('98.6.29)호에 의거 '99년도 자원계획	300,000

□ 특 별 회 계 : 없음

2. 채권 및 채무

가. 채권

(단위 : 천원)

구 분		'97년말현재액	'98년 발생액	'98년 소멸액	'98년말현재액
합 계		3,519,772	2,331,287	1,250,519	4,600,540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3,519,772	2,331,287	1,250,519	4,600,540
	의료보호	703,000	0	118,000	585,000
	영세민생활안정	589,697	288,558	146,799	731,456
	서울 주민소득	2,237	1,305	2,310	1,232
	주택사업	2,224,838	2,041,424	983,410	3,282,852

나. 채무

(단위 : 천원)

구 분		'97년말현재액	'98년 발생액	'98년 소멸액	'98년말현재액
합 계		59,305,219	2,965,958	△ 9,483,852	53,020,950
일반회계		10,033,520	2,965,958	△ 1,932,067	11,068,604
특별회계	소 계	49,271,699		△ 7,551,785	41,952,346
	공기업	24,931,889		△ 1,620,948	23,534,285
	주택	3,465,029		△ 949,499	2,515,530
	수석농공	10,612,035		△ 2,082,343	8,540,283
	성연농공	8,834,302		△ 2,503,947	6,328,852
	고북농공	1,428,444		△ 395,048	1,033,396

3. 기금 운용

(단위 : 천원)

종 류 별	'97년말 현재액	'98년 증 감 액			'98년말 현재액
		수납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423,054	694,382	103,400	590,983	2,014,037
노인복지기금	300,000	253,327	0	253,327	553,327
저소득주민정착기금	199,072	95,482	17,400	78,082	277,153
생활보호적립기금	3,982	910	0	910	4,893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200,000	200,000	200,000	0	200,000
경제살리기특별기금	660,000	660,000	660,000	0	660,000
재난관리기금	0	38,159	0	38,159	38,159
재해대책기금	60,000	220,503	0	220,503	280,503

4.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97년말 현재액	'98년 증 감 액			'98년말 현재액
		취 득	매 각	증 감	
합 계	331,315,814	15,880,138	749,203	15,130,935	346,446,749
행정 재산	107,086,687	15,880,138	0	15,880,138	122,966,825
보존 재산	183,471,001	0	0	0	183,471,001
잡종 재산	40,758,126	0	749,203	△ 748,203	40,008,923

5.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액: 천원, 수량 :개)

구 분	'97년말 보유현황	'98 증감 실적		'98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수 량	1,030	52	35	1,047
금 액	2,751,388	501,596	269,919	2,983,065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

제 안 번 호	제 10P 호
의결년월일	1999. 12. 20. (제 47 회)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 출 년 월 일	1999. P. 2.

제안번호	제 10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47 회)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6. 2.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안 번호	109

제출년월일 : 1999. 9. 2.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 안 이 유

o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업무에 반영.개선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 요 골 자

o '98회계년도 결산현황 (별첨)

□ 첨 부 서 류

o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o 결산검사 의견서
o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순 서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 2

□ 결 산 검 사 개 요 ------- 3

□ '98 세 입·세 출 결 산 현 황 ------- 4

□ '98 결 산 검 사 결 과 분 석 ------- 5

□ 검 사 결 과 지 적 사 항 ------- 13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서산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서산시의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199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서산시 일반회계, 13개의 서산시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1998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년도의 서산시 일반회계와 13개의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별첨 지적사항(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1999년 8월 일

서산시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서산시의회의원	이 창 배
위 원		이 강 수
위 원		현 태 행
위 원		성 경 식
위 원		모 영 만

결 산 검 사 개 요

1998회계년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1998년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법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므로 본 결산검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결산의 수치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와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계성으로 인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수치도 검증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중 수행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이었습니다만, 상기 내용외에 시정 및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로 후술하였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명		예산현액 (A)	결산액		
			세입(B) (B/A)	세출(C) (C/A)	이월액(D) (B-C)
총계		235,330,581	234,716,736 (99)	174,238,667 (74)	60,478,069 (24)
일반회계		206,333,466	208,861,283 (101)	155,336,189 (75)	53,525,094 (26)
특별회계	소계	28,997,115	25,855,453 (89)	18,902,478 (65)	6,952,975 (24)
	상수도	10,502,511	10,707,767 (102)	7,965,937 (76)	2,741,830 (26)
	주택	1,901,290	1,808,051 (95)	1,410,213 (74)	397,838 (21)
	의료보호	1,810,465	1,810,185 (99)	1,801,171 (99)	9,014 (1)
	영세민	240,659	234,843 (98)	212,460 (88)	22,383 (10)
	주차장	486,480	478,957 (98)	106,645 (22)	372,312 (76)
	공영개발	1,384,137	1,177,992 (85)	1,038,393 (75)	139,599 (10)
	구획정리	3,566,336	1,322,156 (37)	225,426 (6)	1,096,730 (31)
	수석농공	2,847,739	2,195,796 (77)	2,088,672 (73)	107,124 (4)
	성연농공	3,316,818	3,331,645 (101)	2,503,971 (75)	827,674 (26)
	고북농공	817,392	569,903 (70)	412,335 (50)	157,568 (20)
	농어촌발전	494,088	554,828 (112)	350,204 (71)	204,624 (41)
	새마을	224,579	229,935 (102)	2,780 (1)	227,155 (101)
	모자복지	222,576	222,612 (100)	60,000 (27)	162,612 (73)
	하수도	1,182,045	1,210,783 (102)	724,271 (61)	486,512 (41)

'98결산 결과 분석

□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명	예산현액 (A)	결산액		
		세입(B) (B/A)	세출(C) (C/A)	이월액(D) (B-C)
총 계	235,330,581	234,716,736 (99)	174,238,667 (74)	60,478,069 (24)
일반회계	206,333,466	208,861,283 (101)	155,336,189 (75)	53,525,094 (26)
특별회계	28,997,115	25,855,453 (89)	18,902,478 (65)	6,952,975 (24)

o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현액 235,330,581천원에 비교하여

- 총 예산현액의 99%인 234,716,736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의 74%인 174,238,667천원이 지출됨으로서
  세입액의 24%인 60,478,069천원이 '99년도로 이월처리되었음.

-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경우 206,333,466천원의 예산현액중 208,861,283천원이 수납되어 155,336,189천원을 지출하고, 53,525,094천원을 이월처리함으로서 수납액 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28,997,115천원의 예산현액중 25,855,453천원이 수납되어 18,902,478천원을 지출하고 6,952,975천원을 이월처리함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및 집행실적이 미흡함.

□ 세입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정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A)	미수납액(D) (B-C)	결손처분	이 월 액
총 계	235,330,581	241,012,841 (102)	234,716,736 (99)	6,296,105 (2)	289,808 (5)	6,006,297 (95)
일반회계	206,333,466	213,471,767 (103)	208,861,283 (101)	4,610,484 (2)	289,808 (6)	4,320,676 (94)
특별회계	28,997,115	27,541,074 (95)	25,855,453 (89)	1,685,621 (6)	0	1,685,621 (100)

o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06,333,466천원보다 7,138,301천원을 초과한 213,471,76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08,861,28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4,610,484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289,808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320,676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o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8,997,115천원보다 1,456,041천원이 적은 27,541,07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5,855,45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685,621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B) (B/A)	지 출 액(C) (C/A)	이 월 액(D) (D/A)	불 용 액(E) (E/A)
총 계	235,330,581	181,009,943 (76)	174,238,667 (74)	43,430,246 (18)	17,661,668 (7)
일반회계	206,333,466	160,331,771 (77)	155,336,189 (75)	38,951,326 (18)	12,045,951 (5)
특별회계	28,997,115	20,678,172 (71)	18,902,478 (65)	4,478,920 (15)	5,615,717 (19)

o 일반회계 예산현액중 160,331,77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155,336,18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8,951,326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27,975,145천원, 사고이월 4,995,582천원, 계속비 5,980,599천원이며, 나머지 12,045,95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o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중 20,678,172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18,902,47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478,920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2,703,225천원, 사고이월 1,775,695천원이며, 5,615,71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이월액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 계	43,430,246	30,678,370	6,771,277	5,980,599
일반회계	38,951,326	27,975,145	4,995,582	5,980,599
특별회계	4,478,920	2,703,225	1,775,695	0

o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43,430,246천원임.

- 일반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1세기 서산시 장기발전 전략 수립 연구사업외 183건에 27,975,145천원, 사고이월은 해미읍성 정비사업외 31건에 4,995,582천원, 계속비 이월은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외 1건에 5,980,599천원으로 총 38,951,326천원이 이월되었음.

- 특별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의 2,703,225천원, 사고이월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1,775,695천원으로 총 4,478,920천원이 이월되었음.

□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24,008,969	208,861,283	15,147,686
지 방 세		29,699,697	29,699,697	
세외수입	소 계	76,218,228	62,683,265	13,534,963
	경상적세외수입	15,792,254	13,490,310	2,301,944
	임시적세외수입	60,425,974	49,192,955	11,233,019
지 방 교 부 세		51,055,000	51,055,000	
지 방 양 여 금		13,234,934	13,234,934	
보조금	소 계	52,651,110	51,038,387	1,612,723
	국 고 보 조 금	33,075,160	31,641,629	1,433,531
	시·도비보조금	19,575,950	19,396,758	179,192
지 방 채		1,150,000	1,150,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66,272,730	155,336,189	10,936,541
인 건 비	18,993,207	18,944,691	48,516
물 건 비	21,456,328	19,565,975	1,890,353
이 전 경 비	19,625,316	17,996,535	1,628,781
자 본 지 출	93,796,195	92,818,257	977,938
융 자 및 출 자	966,773		966,773
보 존 재 원	5,678,225	1,377,780	4,300,445
내 부 거 래	5,362,083	4,282,783	1,079,300
예 비 비 및 기 타	394,603	350,168	44,435

□ 세입금 불납 결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 타
계	289,808	227,842		56,966	5,000
일반회계	289,808	227,842		56,966	5,000
특별회계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계	5,975,283	270,623	39,962	404,130	4,214,152	1,046,416
일반회계	4,320,676	270,623	39,962	381,469	3,603,306	25,316
특별회계 (공기업제외)	1,654,607			22,661	610,846	1,021,100

□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7년말 현재액	'98년도 발생액	'98년도 소멸액	'98년말 현재액
합 계		3,519,772	2,331,286	1,250,519	4,600,539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3,519,772	2,331,286	1,250,519	4,600,539
	새마을	703,000		118,000	585,000
	영세민	589,697	288,558	146,799	731,456
	의료보호	2,237	1,305	2,310	1,232
	주 택	2,224,838	2,041,423	983,410	3,282,851

□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7년말 현재액	'98년도 발생액	'98년도 소멸액	'98년말 현재액
합 계		59,305,219	2,965,958	9,483,852	53,020,950
일반회계		10,033,520	2,965,958	1,932,067	11,068,604
특별회계	소 계	49,271,699	0	7,551,785	41,952,346
	공기업	24,931,889	0	1,620,948	23,534,285
	주 택	3,465,029	0	949,499	2,515,530
	수석농공	10,612,035	0	2,082,343	8,540,283
	성연농공	8,834,302	0	2,503,947	6,328,852
	고북농공	1,428,444	0	395,048	1,033,396

□ 수지 및 재정력

구 분	현 년 도 (천원)	전 년 도 (천원)	증 감 (천원)	구 분	현 년 도	전 년 도
세 입 총 액	208,861,283	187,420,881	21,440,402	자 립 도	35.16%	34.35%
세 출 총 액	155,336,189	142,921,488	12,414,701	1 인 당 재정 규모	천원 1,030	천원 954
차 인 잔 액	53,525,094	44,499,393	9,025,701	1인당표준 재정 규모	천원 510	천원 495
조 상 충 용 충 당 금				재 정 력 지 수	0.29	0.28
잉영금사용 채무상환액				건 전 성 지 수	0.88	0.84
실 질 수 지	53,525,094	44,499,393	9,025,701	책임재성 지 수	2.36	1.83
단년도수지	△9,025,701	△12,085,117	3,059,416	이전수입 비 율	49%	52%
적 립 금 액				경상비대 투자비교	2.8	2.26
적 립 해재액				재무투자 평 준 치	0.89	0.54
적 립 차 액				1 인 당 세무담액	409,630원	372,180원
실질단년도 수 지	△9,025,701	△12,085,117	3,059,416	채 무 현 재 액	천원 40,385,376	천원 44,479,441
				적 립 금 총 액	천원 250,748	

검사결과지적사항

1.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

o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총 계	235,330,581	174,238,667	43,430,246	17,661,668
일반회계	206,333,466	155,336,189	38,951,326	12,045,951
특별회계	28,997,115	18,902,478	4,478,920	5,615,717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98회계년도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43,430,246천원이 이월되었고, 7%인 17,661,668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97회계년도 대비 증가한 수치임.

o 조치의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대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착수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8회계년도에 발생된 이월 및 불용액 사유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월 및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지방세 체납액 관리 부실

o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총 계	5,975,283	270,623	39,962	404,130	4,214,152	1,046,416
일반회계	4,320,676	270,623	39,962	381,469	3,603,306	25,316
특별회계	1,654,607			22,661	610,846	1,021,10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신규세원을 포착하는등 세원의 확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한 5,975,283천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리도 형평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고,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된 후에도 고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도 일부 차량의 번호판만 영치하는등 형평성과 체납자 관리가 부실함.

o 조치의견

지방세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체납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세 형평에 맞도록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고질적인 체납자는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가 필요하고, 자동차 체납자 관리는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공매를 강행하고 타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하여 조세 채권이 일실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가 필요함.

3.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미흡

○ 현 황

토지소재지	토지 취득자	취득일	취득자 사망일	상속 양도일	과태료 부과일	결손 처분일
대산읍 대산리112-31	송수영	'91.2.26	'95.12.20	'96.6.27	'96.8.6	'99.1.14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 권리와 의무의 승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과하여 결손 처분하였고, 폐기물 수거수수료중 징수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처분은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체납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미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는 1992. 1993년도 임대료를 1998년에 징수하였으며, 현재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실된 임대료가 15건에 10,508천원이 있음.

○ 조치의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 관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징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는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부당이익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반환해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고지 및 독촉후 장기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등 별도의 채권 확보 조치의 절차를 실시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 및 관리하여야 할 것임.

4. 재산세 과세 부적정

o 현 황

(단위 : ㎡)

납세의무자	상 호	면 적		
		대 장	허 가	과 세
박 호 산	코리 아나	268.97	192.61	268.97
김 국 재	카사블랑카	200.9	120	200.9
신성, 김경환	비지 니스	294.98	160.95	196.27
나자근,구성하	대 궁	159.02	129.4	159.0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이 영업허가 면적과 재산세를 부과한 면적이 차이가 있음.
면적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써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음.

o 조치의견

재산세 부과시 허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실측한 영업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과의 차이가 나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재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5. 노후 양수장비 관리 미흡

o 현 황

구 분	노후양수장비			
	양수기		전기모터	
	수 량	구입년도	수 량	구입년도
계	9		9	
대 산	2	1978	4	1981
인 지	1	1978		
부 석	2	1979		
지 곡	2	1978	2	1981
성 연			1	1981
음 암	2	1978		
운 산			1	1981
해 미			1	1981

읍.면.동에서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43대, 전기모터 39대의 대부분이 최근 5년동안 임대 사용한 실적이 없으므로 가동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20여년된 노후 양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o 조치의견

한해대책용 양수장비는 한해시 사용하는 장비로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평상시 가동상태등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장비는 정비 보수하고 사용 불가한 노후장비는 폐기 처분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함은 물론 한해 발생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해 대책용 장비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임.

6.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차량관리 미흡

o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주정차 과태료			
	징수		미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4,437	1,504,513	17,760	608,047
1991~1997	41,183	1,358,387	15,858	545,273
1998	3,254	146,126	1,902	62,774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7,760건에 608,047천원이나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차적 압류후 수년간 방치 상태에 있고, 유료 주차장 수탁금 징수는 매분기 계약일 10일전까지 완납해야 함에도 미수금이 1,799천원 발생하였으며, 서산시 거주자중 자동차 차적을 옮기지 않은 미등록 차량이 754대임.

o 조치의견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유료 주차장 미수금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장 계약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없이 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로 수탁금이 적정선에서 계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미등록 차량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미등록 차량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임.

7.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미확보

o 현 황

마을회관 신축시 일정금액의 자부담을 확보하여 신축하도록 보조 결정되어 동사업비에 의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에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자기 부담금을 입금한 근거가 불분명함으로 미확보하여 신축된 것으로 사료되며, 무육간벌 사업에 있어서는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당초 계획에 의한 성과를 달성되지 못하였음.

o 조치의견

마을회관등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자체 부담금 확보 및 투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계획된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무육간벌 사업은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다하여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보조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반드시 자부담을 부담케하고 계획된 면적이 간벌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의 기술과 노동력등을 감안하여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8.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미흡

o 현 황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사업이 토양의 PH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농가별 토지 면적 또는 부락별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장소에 있어서는 차량 통행이 용이한 도로변의 특정인에게 인수증을 받고 공급함으로써 도난 및 훼손으로 인하여 농가에 공급이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토양개량제가 회관 또는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o 조치의견

PH를 측정하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농업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산성이 강한 토지를 선별하여 우선 공급해야 하고 토양개량제를 부락 단위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농가별로 살포시기에 맞추어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전량 살포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9.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실화

o 현 황

시 간	부 서
22	민방위재난관리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축과, 대산출장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동
24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진흥과,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지적과,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26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책개발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98년도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로 차등을 두어 22~26시간으로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나, 이는 부서별로 열등과 소외의식을 가지게 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o 조치의견

일을 많이 하는 부서와 일을 적게 하는 부서를 차등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수도 있으나, 이의 기준을 부서별로 정하는 것은 형편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야근을 많이하는 공무원이 수당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지적사항

o 서산시가 농협 시금고에 자금을 예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기준금리와 우대금리가 있는데, 농협 수신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량고객으로서 서산시가 금리를 적용받을때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점은 아쉬웠으나, 차입금의 금리는 인상되었음에도 기존의 금리를 적용받은 것은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됨으로 시금고 계약시에 예탁금 우대금리의 상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금고 운영이라고 생각됨.

o 공무원 출장시 여비지급은 예산에 편성된 부기 내용으로 출장하였을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여비를 지급하였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부기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9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일련번호	지 적 사 항	처 리 부 서	비 고
1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검사의견서 P13
2	지방세 체납액 관리부실	세 무 과	결산검사의견서 P14
3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미흡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결산검사의견서 P15
4	재산세 과세 부적정	세 무 과	결산검사의견서 P16
5	노후 양수장비 관리미흡	건 설 과	결산검사의견서 P17
6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차량관리 미흡	교 통 과	결산검사의견서 P18
7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미확보	자치행정과, 산림과	결산검사의견서 P19
8	토양개량재 공급 및 살포미흡	산 업 과	결산검사의견서 P20
9	초과근무수당지급 현실화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검사의견서 P21
10	기타지적사항 - 시금고 운영 관련사항 -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 관련사항	세 무 과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검사의견서 P2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여부
1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	'98회계년도 결산액은 '97회계년도대비 이월액이 18% 증가한 43,430,246천원, 불용액은 7% 증가한 17,661,66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98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IMF체제에 따른 외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사업의 규모축소와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7,8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연말에 교부결정되어 많은 사업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음.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경상비 자율 절감과 환경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2000년도 예산편성에는 심도있는 분석으로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기획감사담당관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2	지방세 체납액 관리부실	세원의 확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에 있어 일부 차량의 번호판만 영치하는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바 체납자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강구 요망.	지방세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전 홍보 및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체납자 발생즉시 과세형평에 맞도록 신속한 재산압류 조치 및 조세채권 확보 실시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를 실시하는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여부
3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미흡	폐기물수수료중 징수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시정요망.	폐기물수수료중 징수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수납액은 소관부서에서 결손처분토록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시달 (세무 13388-2365호 '99. 8. 12)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3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미흡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징수·관리하고 있음. ※ 5년이상 국·공유재산 대부료 - 15건 10,508천원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대상 요건중 시효소멸은 독촉 또는 압류등 시효중단 사유없이 5년이 경과할 경우에 해당됨. 그동안 징수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며, '92·'93년 징수한 대부료는 납부자가 재산이 있어 결손처분 대상이 아닌바 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5년이상 체납된 대부료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재산조회등 징수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체납처분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회 계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3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미흡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시 권리와 의무의 승계규정을 무시하고 부과하여 결손처분 한 것은 부당함.	○ 과태료부과 및 결손처리 내역 -'95. 2.18 유휴지 결정공고 -'96. 4.26 토지이용실태조사 -'96. 8 .6 과태료부과 -'96.11.15 과태료납부자 사망 확인('95.12.20사망) -'97, '98년 납부촉구(납부자의 처) -'99. 1.14 결손처리(질의회신문에 의거) ○ 지적사항 근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7 (권리, 의무의 승계)에 제3장의 2의 규정『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된다.』의 권리의무의 승계인 포괄승계에 과태료도 포함된다로 판단 지적한 사항임.	지 적 과	여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과태료 결손처분 근거 -과태료 부과후 납부촉구 과정에서 부과된 납부자의 사망을 확인 -'98.10. 7 법무부장관의 행자부장관 질의 회시에 『과태료처분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행정질서의 벌로써 해태한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권리·의무승계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회신임. -위 질의회신문에 의거 '99.1.14 결손처리 하였음. ○처리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7의 내용 제3장의 2의 규정은(토지거래등의 규제등)토지거래등 규제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인에게 포괄승계한다는 것이므로 제6장 벌칙에 규정한 과태료는 승계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 결손처분 하였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4	재산세 과세 부적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현황이 영업허가 면적과 재산세를 부과한 면적이 차이가 있음. 면적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써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재산세 현황과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허가면적은 영업장의 내부면적만을 실측한 면적이고 재산세 부과면적은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의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으로 부과하여 허가면적과 부과면적은 차이가 있음. 또한 대장상 등재현황과 상관없이 사실상 영업장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부과대상이됨.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여부
5	노후 양수장비 관리미흡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는 한해시 사용하는 장비로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평상시 가동상태등 사용가능여부를 점검하여 사용가능한 장비는 정비보수하고 사용불가한 노후장비는 폐기처분하여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등 한해 대책용 장비유지 관리 철저요망.	'99년도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점검결과 노후장비 양수기 13대, 전기모니터 4대를 2000년 정기 재물조사시 폐기조치할 예정이며, 사용가능한 장비는 정비 보수하여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 설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여부
6	주·정차 과태료징수 및 차량관리 미흡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유료주차장 미수금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장 계약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없이 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로 수탁금이 적정선에서 계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미등록 차량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미등록 차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임.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음. 주차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1차 납부고지, 2차 독촉고지, 3차 압류예고 고지, 4차 압류결과 통지등 고지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주차장 수탁금액을 조기에 납부 독려하여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수탁금 미수금 1,799천원을 '99. 5. 10 징수 완료함. 주차장관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던 종전 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서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겠음. 타 시·도, 타 시·군 등록차량이 우리시로 차적등록 변경시 친절하게 안내하여 차적옮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음.	교 통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여부
7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미확보	마을회관 신축시 일정금액의 자부담을 확보하여 신축하도록 보조결정되어 동사업비에 의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정산서를 제출, 정산서에 자기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자기부담금을 입금한 근거가 불분명함으로 미확보하여 신축된 것으로 사료됨.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회관에 대한 설계를 한후 설계서첨부 보조금 교부신청 하고 있으며 설계금액중 일정금액('98년기준 50,000천원씩 보조)을 초과한 사업비는 마을에서 자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중빙서 첨부 정산을 하고있으며, 자부담금을 포함 신축사업비의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이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음.	자치행정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7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미확보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당초계획에 의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간벌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산주 부담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산주의 영세함으로 인하여 사업비중 산주 부담금의 현금 확보가 어려워 벌채 산물의 정리 등의 직접적인 노력지원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산 림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8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미흡	PH를 측정하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농업기술센터등과 협의하여 산성이 강한 토지를 선별하여 우선 공급해야 하고 토양개량제를 부락단위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농가별로 살포시기에 맞추어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전량 살포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토양개량제는 전·답 전체면적 기준으로 규산질은 5년 1주기, 석회고토는 6년 1주기의 100% 보조지원 사업으로 살포대상 농가와 필지가 많아 주기별로 부락단위로 공급 살포하고 있음. 농가별로 살포시기에 맞추어 공급하는 방안은 석회고토비료의 경우 같은 농가라도 작물에 따라 살포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의 공급, 살포체제를 유지하되 적기에 전량 살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공급, 살포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겠음.	산 업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9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실화	'98년도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로 차등을 두어 22~26시간으로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나 이는 부서별로 열등과 소외의식을 가지게 되어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초과근무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최대 75시간까지 편성 지급토록 하고있는데 현재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 제수당규정 및 예산편성실무지침과 상급기관·타시군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음.	기획감사담당관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10	기타 지적사항(시금고운영 관련사항)	서산시가 농협 시금고에 자금을 예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기준 금리와 우대금리가 있는데, 농협수신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량고객으로서 서산시가 금리를 적용받을 때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지 못한점은 아쉬웠으나, 차입금의 금리는 인상되었음에도 기존의 금리를 적용받은 것은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됨으로 시금고 계약시에 예탁금 우대금리 상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금고 운영이라고 생각됨.	유휴자금 예탁시 우대금리의 상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여 시금고 계약체결 하였음. ('98. 12. 31) '99년부터 예탁하는 유휴자금은 우대금리의 상한율을 적용받고 있음.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여부
10	기타 지적사항	공무원 출장시 여비지급은 예산에 편성된 부기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여 집행하는데 이는 업무대로 부기를 정하여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상시 출장자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할것임.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정 여비로 현재 읍·면·동 소속 공무원과 읍·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월액 여비 운영을 축소추세에 있고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상범위와 기준액을 정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어, 본청·사업소의 공무원 경우에는 월액여비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부방침으로 월액여비를 대신하여 실제 출장 하는 자에게 실비 보상적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비를 운영 하고 있는바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운용토록 하겠음.	기획감사담당관	여